

적립금 운용 · 관리규정

제정 2008. 7.20.
 개정 2010. 5. 1.
 개정 2012. 3. 1.
 개정 2014.11. 3.
 개정 2017.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18. 11. 5.
 개정 2020. 11. 23.
 개정 2021. 09.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 적립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의적립금”이라 함은 적립목적을 정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사용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2. “원금보존적립금”이라 함은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금운영수익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적립금구성) ①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그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 · 건축적립금 · 장학적립금 · 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적립금 사용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등록금회계로부터 비등록금회계로의 적립금 적립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내에서 건축적립금으로만 적립할 수 있다.

제2조의 2 삭제(2020.11.23.)

제3조(적립금의 운용 · 관리) ①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에 기반한 기금운용을 위해 적립금 투자지침서를 작성한다. 적립금 투자지침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위험관련 상품 투자 시 투자리스크를 감안하여 외부 전문운용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의 2(적립금의 투자대상) 삭제 (2021.09.27.)

제4조(적립금의 사용 등) ①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부서) ①적립금운용 · 관리 관리부서는 교육지원처로 하며, 소속직원 중 기금출납 직원을 따로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 ·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위임)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1.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1.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1.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9. 27.부터 시행한다.

3-1-14